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는 대신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물대학교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3.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에 제9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 16.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 17. 지역농업·농촌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18.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 18.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15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제5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유통단계 농약의 품질·유통관리

15. 항공방제업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6 중 총계 “636”을 “637”로 하고, 일반직 계 “632”를 “63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7”을 “118”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1”을 “110”으로 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

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9”를 “6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5”를 “6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2”를 “123”으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9”를 “108”로 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을 “2”로 하며,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53”을 각각 “1,152”로 하고, 행정주사 “4”를 “0”으로 하며, 농업주사 “98”을 “9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6”을 “40”으로 하며, 수의주사 “110”을 “105”로 하고, 행정주사보 “23”을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수의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5”를 “57”로 하고, 공업주사보 “5”를 “3”으로 하며, 농업주사보 “125”를 “120”으로 하고, 수의주사보 “132”를 “127”로 하며, 행정서기 “33”을 “2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7”을 “25”로 하며, 공업서기 “1”을 “0”으로 하고, 농업서기 77 다음에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7”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6”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를

“8”로 하며, 공업서기보 “3”을 “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0 다음에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를 신설하며, 수의연구사 “90”을 “9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53”을 각각 “1,152”로 하고, 행정주사 “4”를 “0”으로 하며, 농업주사 “99”를 “94”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6”을 “40”으로 하며, 수의주사 “109”를 “104”로 하고, 행정주사보 “20”을 “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5”를 “57”로 하고, 공업주사보 “5”를 “3”으로 하며, 농업주사보 “118”을 “113”으로 하고, 수의주사보 “125”를 “120”으로 하며, 행정서기 “34”를 “3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6”을 “24”로 하며, 공업서기 “1”을 “0”으로 하고, 농업서기 72 다음에 “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7”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6”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9”를 “8”로 하며, 공업서기보 “3”을 “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0 다음에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를 신설하며, 수의연구사 “84”를 “8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1”을 각각 “1,492”로 하고,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9”를 “17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8”을 “31”로 하고, 운전서기보 “9”를 “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1”을 각각 “1,492”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49”를 “15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8”을 “31”로 하고,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0”을 “18”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124”를 “125”로 하고, 일반직 계 “54”를 “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1”을 “52”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8 제1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촌정책국) ① ~ ④ (생략)	제8조(농촌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u>
10. ~ 15. (생략)	10.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지역농업 · 농촌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u>
19. · 20. (생략)	19. · 20. (현행과 같음)
⑥ ~ ⑫ (생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 ⑦ (생략)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u>	<u><삭제></u>
4. <u>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u>	<u><삭제></u>
5. <u>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u>	<u><삭제></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u>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제></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u>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u>	<u><삭제></u>
15.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u>	<u><삭제></u>
16. <u>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신설></u>	17. <u>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u>
<u><신설></u>	18. <u>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u>
17. (생략)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⑬·⑭ (생략)	⑬·⑭ (현행과 같음)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4. ~ 18. (생략)

⑰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 ④ (생략)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⑮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 18. (현행과 같음)

⑰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유통단계 농약의 품질·유통관리

15. 항공방제업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⑥ ~ ⑪ (생략)

제38조(한시정원) ①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
부에 둔다.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
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1명(행정사무
관, 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
다.

③ (생략)

<신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38조(한시정원) ① -----

2024년 2월 29일-----

-----.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

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
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
원 1명(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
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
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6</u>	<u>637</u>	+1
·	·	·	
·	·	·	
일반직 계	<u>632</u>	<u>633</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 는 환경사무관	<u>117</u>	<u>118</u>	+1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 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 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	<u>111</u>	<u>110</u>	-1

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	
•	•	•	
<u>운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1</u>	<u>2</u>	+1
운전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9</u>	<u>640</u>	+1
·	·	·	
·	·	·	
일반직 계	<u>635</u>	<u>636</u>	+1
·	·	·	
·	·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통계사무관·전산사무 관·공업사무관·방송통 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 는 환경사무관	<u>122</u>	<u>123</u>	+1
·	·	·	
·	·	·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 주사·시설주사·통계주 사·전산주사·공업주사 ·방재안전주사·방송통 신주사·사서주사·환경 주사·농업연구사·수의 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u>109</u>	<u>108</u>	-1

농촌지도사			
•	•	•	
•	•	•	
<u>운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1</u>	<u>2</u>	+1
운전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53</u>	<u>1,152</u>	-1
일반직 계	<u>1,153</u>	<u>1,152</u>	-1
·	·	·	
·	·	·	
행정주사	<u>4</u>	<u>0</u>	-4
·	·	·	
·	·	·	
농업주사	<u>98</u>	<u>93</u>	-5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 주사·농업주사·전산주 사·통계주사·수의연구 사 또는 농업연구사	<u>26</u>	<u>40</u>	+14
수의주사	<u>110</u>	<u>105</u>	-5
·	·	·	
·	·	·	
행정주사보	<u>23</u>	<u>3</u>	-20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 업연구사	<u>25</u>	<u>57</u>	+32
공업주사보	<u>5</u>	<u>3</u>	-2
농업주사보	<u>125</u>	<u>120</u>	-5
·	·	·	
·	·	·	
수의주사보	<u>132</u>	<u>127</u>	-5
·	·	·	
·	·	·	
행정서기	<u>33</u>	<u>29</u>	-4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7</u>	<u>25</u>	-2
공업서기	<u>1</u>	<u>0</u>	-1
·	·	·	
<u>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공 업서기</u>	<u><신 설></u>	<u>7</u>	+7
행정서기보	<u>6</u>	<u>2</u>	-4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9</u>	<u>8</u>	-1
공업서기보	<u>3</u>	<u>0</u>	-3
<u>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u>	<u><신 설></u>	<u>4</u>	+4

<u>는 공업서기보</u>			
•	•	•	
•	•	•	
수의연구사	<u>90</u>	<u>94</u>	+4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53</u>	<u>1,152</u>	-1
일반직 계	<u>1,153</u>	<u>1,152</u>	-1
·	·	·	
·	·	·	
행정주사	<u>4</u>	<u>0</u>	-4
·	·	·	
·	·	·	
농업주사	<u>99</u>	<u>94</u>	-5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 주사·농업주사·전산주 사·통계주사·수의연구 사 또는 농업연구사	<u>26</u>	<u>40</u>	+14
수의주사	<u>109</u>	<u>104</u>	-5
·	·	·	
·	·	·	
행정주사보	<u>20</u>	<u>0</u>	-20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농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 업연구사	<u>25</u>	<u>57</u>	+32
공업주사보	<u>5</u>	<u>3</u>	-2
농업주사보	<u>118</u>	<u>113</u>	-5
·	·	·	
·	·	·	
수의주사보	<u>125</u>	<u>120</u>	-5
·	·	·	
·	·	·	
행정서기	<u>34</u>	<u>30</u>	-4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6</u>	<u>24</u>	-2
공업서기	<u>1</u>	<u>0</u>	-1
·	·	·	
<u>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공 업서기</u>	<u><신 설></u>	<u>7</u>	+7
행정서기보	<u>6</u>	<u>2</u>	-4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9</u>	<u>8</u>	-1
공업서기보	<u>3</u>	<u>0</u>	-3
<u>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u>	<u><신 설></u>	<u>4</u>	+4

<u>는 공업서기보</u>			
•	•	•	
•	•	•	
수의연구사	<u>84</u>	<u>88</u>	+4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	•	•	
•	•	•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1</u>	<u>1,492</u>	+1
일반직 계	<u>1,491</u>	<u>1,492</u>	+1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169</u>	<u>170</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8</u>	<u>31</u>	+3
·	·	·	
운전서기보	<u>9</u>	<u>8</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0</u>	-2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1</u>	<u>1,492</u>	+1
일반직 계	<u>1,491</u>	<u>1,492</u>	+1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149</u>	<u>150</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8</u>	<u>31</u>	+3
·	·	·	
운전서기보	<u>7</u>	<u>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0</u>	<u>18</u>	-2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4</u>	<u>125</u>	+1
•	•	•	
•	•	•	
일반직 계	<u>54</u>	<u>5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1</u>	<u>52</u>	+1
•	•	•	
•	•	•	